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콘텐츠 개발 지원 등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시설 건립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체육시설 관련 업종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문화시설 건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재 보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고,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및 국제교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3명(가군 1명, 나군 2명)을 각각 연구직 정원 3명(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2명)으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1명(9급 1명)을 행정직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리운영직 1명(9

급1명)을 임업직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운전직 1명(9급 1명)을 전산직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복수직렬 정원에 직렬을 추가(임업사무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정원 1명(시설 7급)을 복수직화(행정 또는 시설 7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2021.6.30.) 제3조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2021.12.31.)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별표1의2)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12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6명)”을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음악산업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복지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및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1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5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7조제5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4의 정원 중 특수언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8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 1명(시설사무관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676”을 “681”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0”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2”를 “17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1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4”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6”을 “179”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4”를 “8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92”를 “5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90”을 “591”로 하며, 일반직 계 “589”를 “59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26”을 “27”로 하며, 학예연구관 “52”를 “54”로 하고, 학예연구사 “153”을 “15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고, 전

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를 “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92”를 “59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90”을 “591”로 하며, 일반직 계 “589”를 “59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26”을 “27”로 하며, 학예연구관 “55”를 “57”로 하고, 학예연구사 “150”을 “15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를 “1”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을 “5”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4 공업서기 1 다음에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313”을 “31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311”을 각각 “312”로 하며,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고, 공업서기 1 다음에 “임업서기 1”를 신설하며, “농림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13”을 “31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311”을 각각 “312”로 하며,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고, 전산서기 2 다음에 “임업서기 1”를 신설하며, “농림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8 공업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95”를 “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5”를 “9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4”를 “95”로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

1. 제50조 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1

2. 제50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u>12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6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3명)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	② ----- ----- ----- ----- ----- ----- ----- ----- ----- -----

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및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²

음악산업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

----- 관광복지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 2명(7급 2명)-----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7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 1명(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담당)]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다.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 ⑱ (생략)

제50조(한시 정원) (생략)

<신 설>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2월 28일까지 별표 17에 따
른 한시정원 1명(시설사무관 1
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 · 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6	681	+5
일반직 계	669	674	+5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임업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71	+17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0	<삭 제>	-170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	 <u>172</u> · ·	 <u>176</u> · ·	 +4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임업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 · <신 설> 184 176 ·	· · 184 <삭 제> 179 ·	+184 -184 +3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4</u>	<u>81</u>	-3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92	593	+1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90	591	+1
일반직 계	589	590	+1
행정서기보	26	27	+1
학예연구관	52	54	+2
학예연구사	153	155	+2
사무운영서기보	7	6	-1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u>2</u>	<u>1</u>	-1
·	·	·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u>6</u>	<u>5</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92	593	+1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90	591	+1
일반직 계	589	590	+1
행정서기보	26	27	+1
학예연구관	55	57	+2
학예연구사	150	152	+2
사무운영서기보	7	6	-1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u>2</u>	<u>1</u>	-1
·	·	·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u>6</u>	<u>5</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전산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13</u>	<u>314</u>	+1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311</u>	<u>312</u>	+1
일반직 계	<u>311</u>	<u>312</u>	+1
·	·	·	
·	·	·	
시설주사	<u>2</u>	<u>3</u>	+1
·	·	·	
·	·	·	
<u>임업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u>농림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3	314	+1
1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11	312	+1
일반직 계	311	312	+1
·	·	·	
·	·	·	
시설주사	2	3	+1
·	·	·	
·	·	·	
임업서기	<신 설>	1	+1
·	·	·	
·	·	·	
농림운영서기보	1	<삭 제>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5</u>	• <u>96</u>	+1
일반직 계	<u>95</u>	<u>96</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4</u>	<u>95</u>	+1